

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(회화·거류)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72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11. 28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- 가.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(회화·거류)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2024. 3. 1.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사업자 선정 필요함.
나.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관리대행 함으로써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위탁근거

- 가. 하수도법 제19조의2
나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

4. 위탁내용

- 가. 민간위탁 사무명: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(회화·거류) 관리대행 용역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근거
 - 하수도법 제19조의2
 -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
 - 필요성
 -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시설 운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관련 기술력을 가진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필요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
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전반
- 맨홀 및 중계펌프장 점검·보수 등

라. 민간위탁 시설 개요

- 설치목적: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방류 수역의 수질보전과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
- 소재지
 - 회화면 마구들4길 99, 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(2009년 설치)
 - 거류면 거류로 516-10, 거류공공하수처리시설(2014년 설치)
- 시설규모: 2,200톤/일(회화 1,000톤/일, 거류 1,200톤/일)
- 사진대장



마. 민간위탁 기간: 2024. 3. 2. ~ 2027. 3. 1.(3년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금2,918,940천 원(3년간)

- 연간 위탁 운영비: 금972,980천 원

(붙임1 참조,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 의뢰 산정)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: 붙임2 참조

-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 조作的 특성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,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5. 위탁사유

- 가.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
- 나. 전문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수처리 능력 극대화

6. 기대효과

- 가. 전문 관리대행업체 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
- 나. 민간기관의 전문 기술력 투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하수도서비스 질 개선

7. 향후 추진계획

- 2023. 12. :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뢰
- 2023. 12. : 입찰공고
- 2024. 1. : 제안서 접수 및 평가
- 2024. 2. : 계약 체결
- 2024. 3. : 위탁운영 실시

8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출 사유

-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회화·거류 면단위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 만료기한(2024. 3. 1.) 도래에 따라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-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[참고] 위탁사무 개요

- 위탁근거: 하수도법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- 위탁시설: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(회화면, 거류면)
- 위탁사무
 -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
 - 맨홀 및 중계펌프장 점검·보수 등
 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전반
- 위탁기간: 2024. 3. 2. ~ 2027. 3. 1.(3년간)
- 소요예산: 2,918,940천원(3년간 / 연간 972,980천원)
- 선정방식: 공개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,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 됨.

9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10. 토 론 : 없음.

11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